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8. 2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

본서에 인용하는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을 의미합니다.

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자산운용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발간한 자료로서 금융감독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본서에 게재된 내용은 법규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자산운용감독국 관련 팀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개정판 발간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2월 자산운용업계 실무자 등의 법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집합투자업 등의 진입, 영업행위, 공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법규 내용을 소개하는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업계 실무자 등이 자산운용업무 및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전문사모운용사의 급증으로 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내부통제, 법규준수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의 제도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실무과정에서 참고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 자산운용업자의 법규내용 숙지, 진입 예정업자를 위한 제도 소개 및 기존 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 개정내용 안내 등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 사모펀드 제도개편, 건전성규제 변경 및 공모 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완화 등 지난 3년간의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개정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책자가 업계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업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도 관련법규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에 따라 자산운용 법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책자의 내용은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자산운용업계 실무자 등의 관련법규 준수 및 건전한 업무 영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류국현

제1장 진 입 규 제

제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3
제2절 집합투자업 인가·등록 절차 및 요건	4
I. 인가 절차	4
II. 인가 요건	7
III.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22
IV.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	24
제3절 대주주 변경 승인	29
I. 의의	29
II. 요건	29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절차 및 요건	31
I. 등록 절차	31
II. 등록 요건	33
III. 등록 요건의 유지	37
IV. 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록	37

제2장 건전성규제

제1절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41
I. 도입 배경	41
II.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기준	42
III. 보고 사항	43
제2절 경영건전성 규제	44
I.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44
II. 위험 관리	44
제3절 운영위험 평가 제도 및 적기시정조치	46
I. 운영위험 평가 제도	46
II. 적기시정조치	46
제4절 회계처리	49
I.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계리	49
II. 회계기간	49

제5절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50
I. 업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공시	50
II. 경영상황 보고 및 수시공시	50
제6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51
I. 제한 내용 및 예외적 허용	51
II. 이사회 승인 및 보고·공시 의무	51

제3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개관	55
제2절 공통 영업행위 규제	56
I. 업무겸영 등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56
II. 투자권유(Solicitation) 규제	57
III. 기타 영업행위 규제	62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제	66
I.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66
II.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80
제4절 유사투자자문업	85
I. 의의	85
II. 신고 및 보고의무	85
III. 자료제출 요구	85
IV.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86

제4장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기구 개요	89
I. 집합투자의 정의	89
II.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90
제2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구조	93
I.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93
II. 집합투자기구 구조	94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특수 형태	97
I.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97
II. 증권집합투자기구	100
III. 부동산집합투자기구	106

IV.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107
V.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107
V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107
VII.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10
제4절 펀드 증권신고서 및 등록 제도	117
I. 펀드 증권신고서 제도	117
II. 펀드의 등록	120
제5절 기타 제도	122
I. 자산운용의 제한	122
II.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판매, 환매 등	128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개요	137
I. 사모펀드 정의	137
II. 사모펀드 유형	137
제2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38
I. 설정·설립 및 보고	138
II. 운용주체 및 투자자에 관한 사항	138
III.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	139
IV.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주요 운용규제 등	140
제3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	141
I. 개념 및 주요 특징	141
II. 근거 법규상 분류	142
III. PEF 설립 및 보고	142
IV. PEF 사원에 관한 사항	143
V. PEF 재산 운용 방법	144
VI. PEF의 투자목적회사	145
VII.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	146
제4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이하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제도	147
I. 도입 배경 및 주요 특징	147
II. 외국펀드 등록 개요	148
III.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적격 요건	149
IV. 일반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적격 요건	150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제 1 장 진입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을 통일적으로 규율
 -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영역을 특정 분야로 전문화·특화할 수 있고, 업무단위 추가(add-on)를 통해 업무영역의 확장도 가능
 -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겸영·부수 업무에 한해 금융투자업영위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과 상품, 투자자 유형에 따라 총 87종으로 분류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신탁업은 69종의 인가단위로 운영
 - 집합투자업은 4종의 인가단위와 1종의 등록단위로 운영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13종의 등록단위로 운영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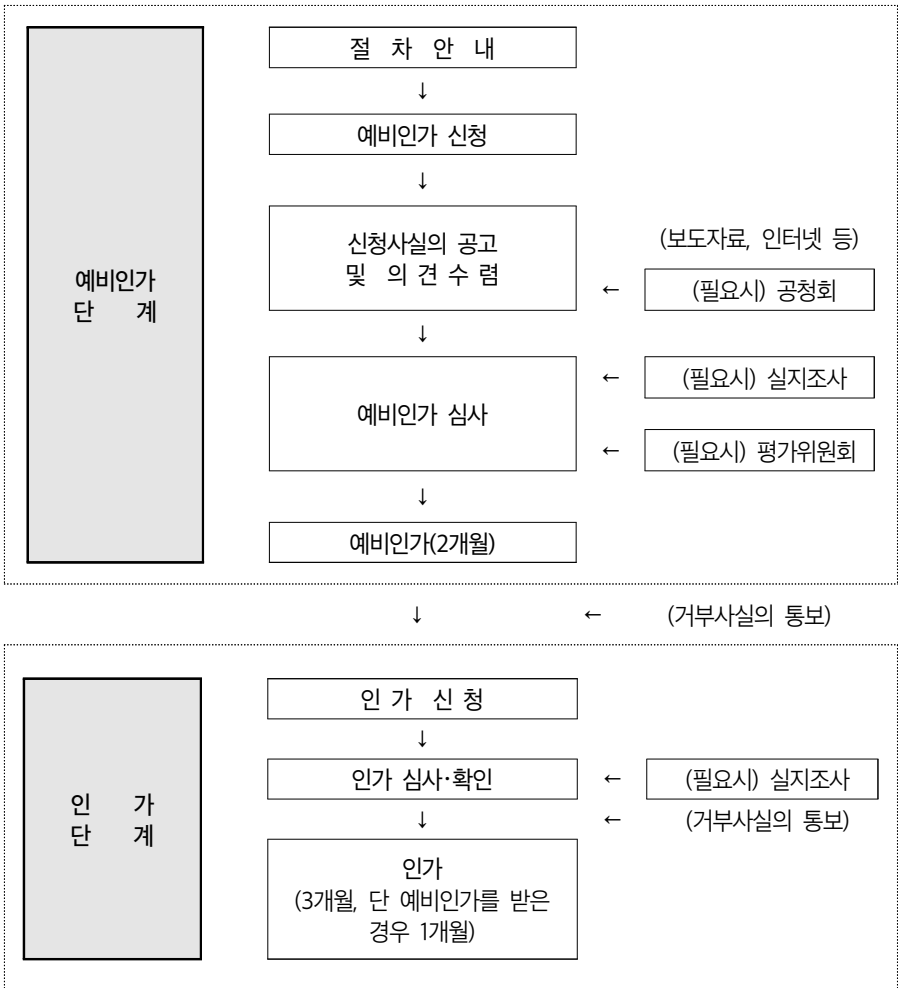
업종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61종	인가 (73종)
	▶ 장내파생 / 주권기초		
	▶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신탁업	▶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8종	
집합투자업	▶ 모든 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4종	
	▶ 모든 펀드(적격투자자만 대상)	1종	
투자자문업	▶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 / 증권·파생·예치금, 부동산·예치금, 펀드 등	7종	등록 (14종)
투자일임업	▶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 / 증권·파생·예치금, 부동산·예치금	6종	

제2절 집합투자업 인가·등록 절차 및 요건

I 인가 절차



<인가 절차 흐름도(금융투자업규정 별표1)>



1 예비 인가

(1) 절차 안내

- 신청예정자에 인가절차 및 요건을 안내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논의
 - 신청회사는 법(§12)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준비
 - ※ 신청인은 인가신청 전 금감원(자산운용감독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인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을 확인

(2) 예비인가 신청(신청회사 → 금융위)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인가신청 공문과 함께 금융위(자산운용과)에 제출(인가신청)

(3)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금융위는 해당 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인가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방법과 기간 등을 공고(e-금융민원센터에 공고)

(4) 예비인가 심사

- 금감원은 금융위의 검토의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금융위에 송부
 - 인적요건 및 대주주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원내 관련 부서에 요건 결격 여부를 조회
 -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심의

(5) 예비인가(금융위)

-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
(인가시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 인가 거부시 서면통보)

2 본인가

(1) 인가신청

- 신청인은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
 - 금융위는 해당 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인가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방법과 기간 등을 공고(e-금융 민원센터에 공고)

(2) 인가 심사 및 확인

- 금감원은 금융위의 검토의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심사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금융위에 송부
 - 예비인가 사업계획에 따라 인가요건을 실제로 구비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실지조사 실시)

(3) 인가(금융위)

-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
(인가시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 인가 거부시 서면통보)

II 인가 요건



※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회사형태, 최저자기자본, 사업계획, 인력·물적 설비, 임원 및 대주주요건, 신청회사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회사형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16①)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기관

○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에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자기자본

□ 인가업무 단위별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함

집합투자업 자기자본 요건

(단위: 억원)

	모든 펀드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일반+전문	80	40	20	20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은 수지전망의 타당성,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인적·물적 설비

-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구비해야 함

(5) 임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임원으로 재직할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6) 대주주 및 외국금융투자업자

- 대주주 및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별표2)

<대주주의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구분	요건
	<p>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기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p> <p>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구분	요건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약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약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 마목 및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 마목, 제2호 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 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마목 및 제4호 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7) 신청회사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경영건전성 기준(법§31)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 다음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적합할 것

-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8) 이해상충 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 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1-12-1, 1-12-2	3	3	2	2	-
11-1-1, 11-1-2	3	-	1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11-12-1, 11-12-2	2	-	1	-	-
1-2-1, 1-2-2 1-21-1, 1-21-2	2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1a-1-2	3				-
2-1-1, 2-1-2	-	-	1	5	-
2-11-1, 2-11-2 2r-1-2, 2i-11-2i	-	-	-	2	-
2-12-1, 2-12-2	-	-	1	3	-
2-2-1, 2-2-2 2-21-1, 2-21-2	-	-	-	2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2a-1-2				3	-

※ 비교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이란 영 제68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확인, 필요서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의2. 이 표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회가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상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합산하여 상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 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추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추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 비교

-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1-1-1, 1-3-1 및 2-1-1을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집합 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1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전산 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1a-1-2 또는 2a-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 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및 2a-1-2 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는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 설비를 갖출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 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시전망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4)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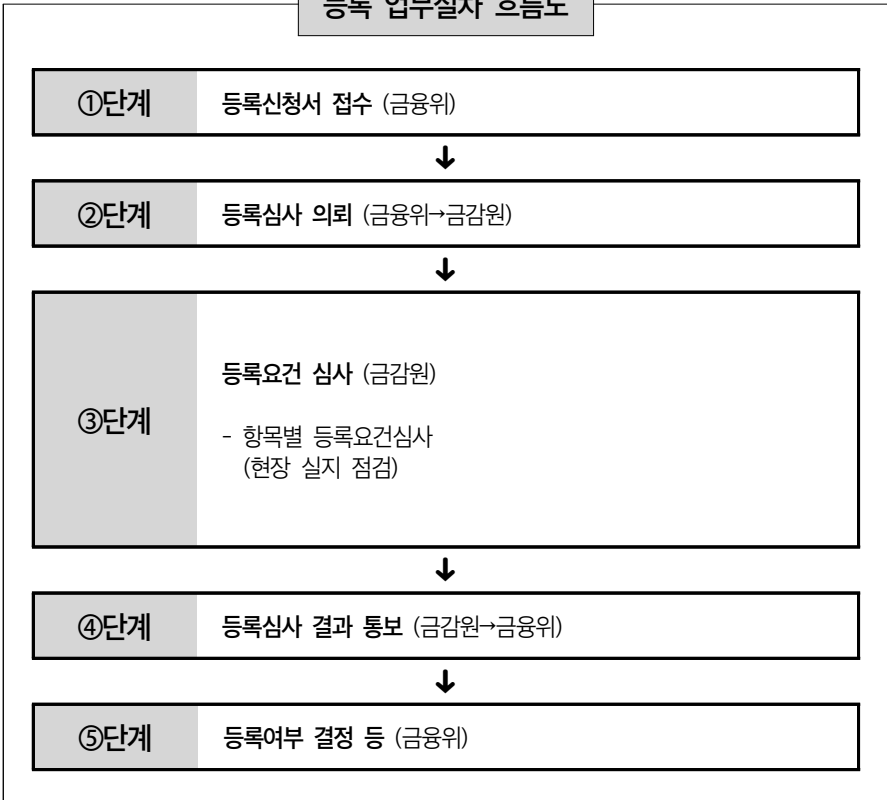
-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3)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III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①단계 등록신청서 접수 (금융위)

-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 (법 제249조의3 제3항)
 -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
(시행령 제271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의2호)
- 금융위의 등록신청서 접수 (법 제249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49조의4)

②단계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금감원)

- 등록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시행령 별표20 제142의2)되어 있으므로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의 등록요건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하기 위해 공문 발송
 -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등록심사 업무 착수

③단계 등록요건 심사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④단계 등록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금융위)

-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토대로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서장 내부결재로 보고를 완료하고, 금융위에 통보
 - * 심사결과보고서 금융위 통보는 法定 등록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의 등록여부 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

⑤단계 **등록여부 결정 등 (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IV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형태, 자기자본, 전문인력, 임원, 대주주, 신청회사, 이해상충방지체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항목별 심사내용 요약

심사항목	심사내용
▶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자기자본 요건	○ 최저자기자본
▶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제4항제1호,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규정 <별표 2>의 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물적 요건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제4항제2호, 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구비할 것
▶ 대주주 요건	○ 영 <별표2> 및 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요건	○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 영 제271조의2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 방지체제 요건	○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 영 제271조의2제9항,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제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출 것

(1) 회사형태(법 §249의3② 1호)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외국 집합투자업자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 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영업소 등을 설치한 자

(2) 자기자본(법 §249의3②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전문인력(법 §249의3② 3호)

- 3인 이상의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 ※ 전문인력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7-41의2①, 규정 별표2 참조

(4) 물적설비(법 §249의3② 3호)

- 다음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 ※ 물적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7-41의2①, 규정 [별표 2] 참조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5) 임원(법 §249의3② 4호)

- 집합투자업 인가 요건 중 (5)임원요건과 동일

(6) 대주주(법 §249의3② 5호)

구분	대주주 요건
<p>내국법인</p> <p>금융기관</p>	<p>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③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한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자진폐지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신청한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부를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가 아닐 것</p> <p>④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광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 명령이나 중지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p> <p>⑥ 출자자금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가) 유상증자</p> <p>(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p> <p>(다) 내부유보</p> <p>(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금융기관이 아닌 법인</p>	<p>①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④제외)을 갖출 것</p> <p>②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개인</p>	<p>①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④,⑥제외)을 갖출 것</p> <p>②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③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p> <p>④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 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구분	대주주 요건
	⑤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 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외국법인	① 등록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등록하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⑥제외)을 갖출 것

(7) 신청회사(법 §249의3② 6호, 영 §271의2㉞, ⑧)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을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사실
- 금융관련법령(외국 금융관련법령 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 포함)을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8) 이해상충 방지체계(법 §249의3② 7호, §44, §45, 영 §271의2②, 규정 [별표2])

-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3절 대주주 변경 승인

I 의의



- 집합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①)
 -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 등을 한 주식과 지배구조법 §31②에 따른 취득 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③, ④)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⑤)

II 요건



-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은 신규 진입 시 대주주 요건에 비해 완화돼 있음

변경 승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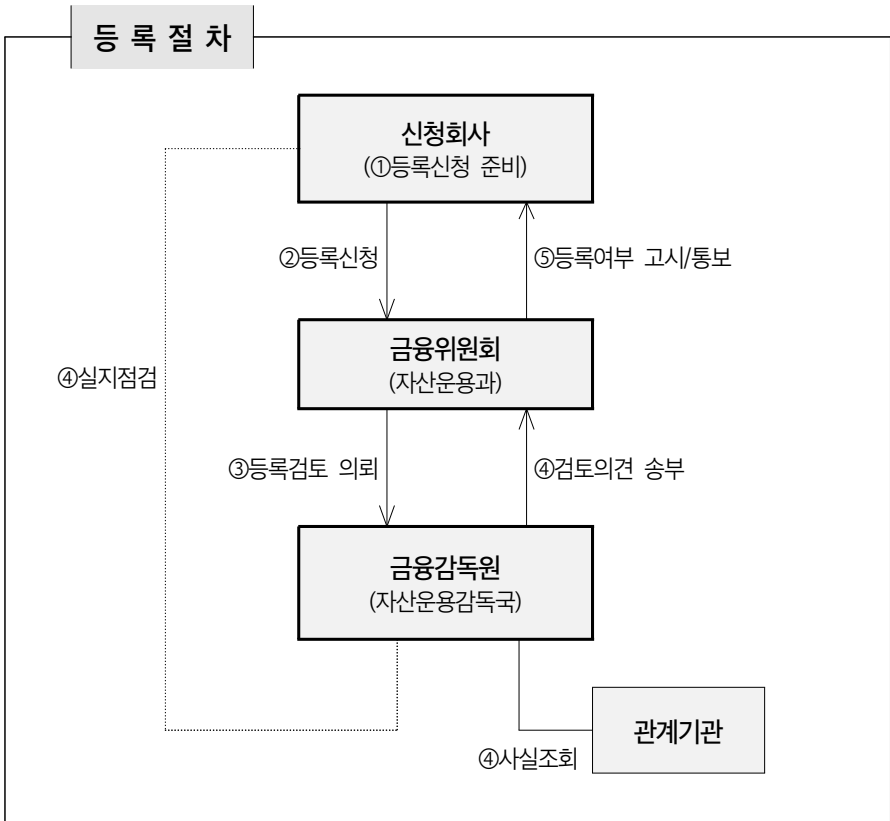
* 국가, 예금보험공사 등은 제외됨

** 이 표에서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미

- ① **최대주주**(지배구조법 §2 6호 가목)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지배구조법 §2 6호 나목)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배구조법 §31①에 의해 포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4절 투자자문·일일업 등록 절차 및 요건

I 등록 절차



(1) 등록신청 준비

- 신청회사는 법(§18)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등록신청 시에는 상호에 '투자자문' 이라는 문구 사용금지

(2) 등록신청(신청회사→금융위)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신청 공문과 함께 금융위(자산운용과)에 제출(등록신청)

※ 신청인은 등록신청 전 금감원(자산운용감독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등록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확인

(3) 등록검토 의뢰(금융위→금감원)

- 금융위는 등록신청한 회사의 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금감원에 의뢰

(4) 검토의견 송부(금감원→금융위)

- 금감원은 외부기관(검찰·경찰·지자체 등)과 원내 관련부서 사실조회 및 실지점검 등을 통해 신청회사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송부

(5) 등록여부 고시/통보(금융위→신청회사)

-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등록여부 결정(등록시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 등록거부시 서면통보)

II 등록 요건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형태, 자기자본, 전문인력, 임원, 대주주, 신청회사, 이해상충방지체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1) 회사형태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법 §18② 1호)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특정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외국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투자자문(일임)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영업소 등을 설치한 자

(2) 자기자본

-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권유대상에 따라 최저자기자본이 구분됨
(법 §18② 2호, 영 §21②, [별표3])

자기자본 요건

(단위: 억원)

구분	투자대상자산	자기자본*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8
	금융투자상품	5
	부동산	3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1**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23
	금융투자상품	15
	부동산	8

* 일반 및 전문투자자 대상 기준이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기 금액의 1/2 적용

** 해당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단위 없음.

(3) 전문인력(법 §18② 3호)

□ 투자자문업 : 1인 이상의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일임업 : 2인 이상의 상근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문·일임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등 3인 이상의 전문인력 필요(전문인력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 투자대상자산의 범위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등록업무 단위인 경우[5-2-1(2), 5-21-1 및 6-2-1(2)를 제외한 등록업무 단위]

☞ 전문인력이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여야 함

▷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서 부동산교육(부동산투자자문인력교육)을 받거나 아래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투자운용인력: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증권운용전문인력인 자가 부동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운용전문인력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춘 것

※ 최저자기자본 1억원인 등록업무 단위인 경우[5-21-1 등록업무 단위]

☞ 전문인력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4) 임원

□ 집합투자업 인가 요건 중 (5)임원요건과 동일

(5) 대주주(법 §18②5, 영 §21⑤, 영 [별표2], 규정 §2-9, 규정 [별표3])

구분		대주주 요건
내국법인	금융기관	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구분	대주주 요건
	<p>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③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한 등록업무 단위를 자진폐지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신청한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부를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가 아닐 것</p> <p>④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p> <p>⑥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p>①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④제외)을 갖출 것</p> <p>②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개인	<p>①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④제외)을 갖출 것</p> <p>②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③ 최근 3년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악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p> <p>④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외국법인	<p>① 등록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등록하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p> <p>②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③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을 갖출 것</p>
경영참여형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규정 [별표3] 참조

(6) 신청회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18②5의 2호, 영 §21㉞, 영 §16㉟)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 최근 5년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사실
 - 금융관련법령(외국 금융관련법령 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 포함)을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7) 이해상충 방지체계

-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법 §18② 6호, §44, §45, 영 §21㉟)

III 등록 요건의 유지



- 등록 이후 등록 요건(신청회사 요건은 제외)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자본 요건과 대주주 요건은 최초 등록 당시보다 완화된 유지요건 적용(법 §20, 영 §23)
 - 자기자본 요건: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
 - 대주주 요건:
 -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 ①*, ②에 한해 유지
 - 외국법인인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 요건 ①*, ② 및 외국법인 대주주 요건 ②**에 한해 유지
 -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을 것'으로 완화 적용(최대주주에만 적용)
 - **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본국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완화 적용(최대주주에만 적용)

IV 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록



- 기존 등록업무 단위와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법 §21, 영 §23-2)
 - 변경 등록 요건은 최초 등록 요건과 동일하나 대주주 요건은 '등록 요건의 유지'에서와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

제 2 장 건전성규제

제2장

건전성규제

제1절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I 도입 배경



- (NCR규제의 한계) NCR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모델* 및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
 - * 증권사가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PI투자·위험인수 등)하는 특성 반영 ☞ 건전성·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
 -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 관련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시장·신용위험에 대비하는 NCR규제는 정합성이 다소 낮음
 - 규제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 비해 높은 NCR 유지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
- (개선방안)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권간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 특성에 부합한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
 -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인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15.4월)(규정 §3-6 4의2호, §3-24의3)
 -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는 2종 금융투자업자(규정 제3-6조 22호, 인가제 집합투자업자)에 적용되어 등록제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매 회계연도말 기준 필요유지자기자본 충족 필요)

II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기준



- (필요유지자기자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 (규정 §3-6 2호)
 - * 개별 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하여 적립(규정 §3-24의3㉔)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합계액의 0.03%로 하되, 소송발생 등 투자자 손실 발생가능성이 낮은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0.02%로 함(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별표 8-2)

고객자산 유형		적립 비율
집합투자재산	증권집합투자기구	0.02%
	그 외의 집합투자기구	0.03%
투자일임재산		0.03%

-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완충 자본 적립(규정 §3-24의13㉔)
 -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합계액의 1%~10%* 로 함(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별표 8-2])
 - * 해외현지법인 지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 및 국채 등 저위험성 자산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고유자산 유형			적립비율*
증권	지분증권	해외현지법인 지분	-
		관계회사투자지분	7.5%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7.5%
채무증권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1%
		그외의 경우	5%

고유자산 유형		적립비율*
집합투자 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5%
	기타 증권	7.5%
대출채권		7.5%
파생상품		10%

*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적립 비율을 2배로 증액

III 보고 사항



- (상시관리 및 미달보고) 운용사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규정 §3-26④)
 - 해당 운용사는 향후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자기자본을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하고,
 - 자기자본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 운용 필요자본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고
- (정기보고) 최소영업자본액은 분기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이며,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규정 §3-66㉞)

제2절 경영건전성 규제

I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 (의의) 매분기 일정한 자산과 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일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규정 §3-7)
 -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규정 [별표 7])
 - ** 대손준비금 및 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
 - (분류대상) 대출채권(이자수취 등 목적의 대여 자산·대지급금 일체), 가지급금과 미수금, 미수수익 등의 자산과 채무보증이 해당
 - (적립기준) 각 단계별로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이상의 충당금 등을 적립(규정 §3-8)
- (보고사항)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설정·변경, 분류결과 및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규정 §3-7⑤)
 - *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정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규정 §3-7③)

II 위험 관리

- (의의) 운용사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규정 §3-42)
 - (위험관리조직) 이사회(또는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적정투자한도 등을 승인(규정 §3-43)
 -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 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관리

- (위험관리지침) 내부적으로 관리할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준수 의무(규정 §3-44①)
- (보고사항) 위험관리지침을 제정·변경한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규정 §3-44④)
- 금융감독원장은 운용사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 가능(규정 §3-42⑤)

제3절 운영위험 평가 제도 및 적기시정조치

I 운영위험 평가 제도



- (도입배경) 기존에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던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고객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
 - *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적기시정조치 사례가 없는 등 규제 실익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
 -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되,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
- (개선방안)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15.4월)
 - 자산운용사가 매반기말 작성·제출한 운영위험 관리 현황(고객자산 운용, 내부통제 부문)을 5단계로 평가

II 적기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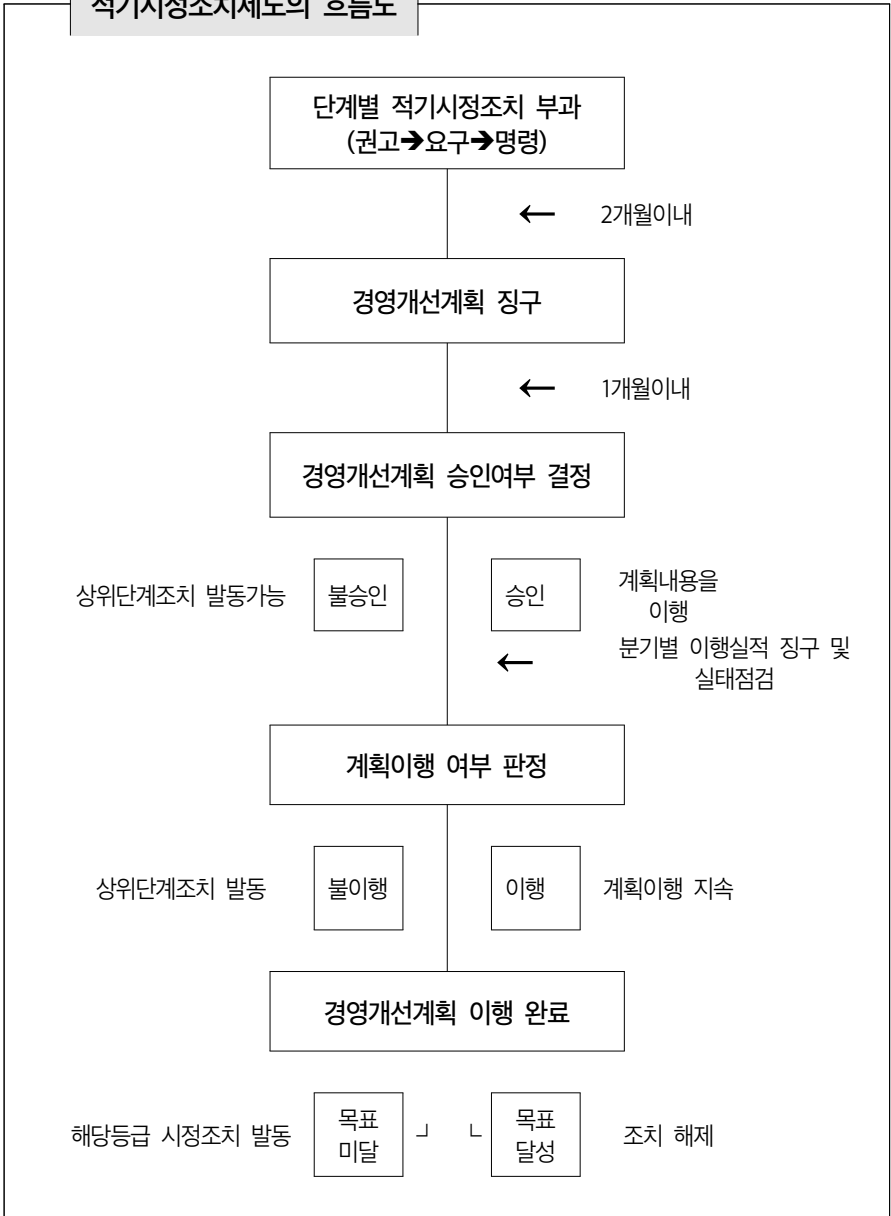
- (의의) 부실화 징후가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적기에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건전성 감독수단
 - * 적기시정조치는 인가대상인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외(규정 §3-6 22호)
 - (경영개선권고)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 §3-26①) 등*
 - *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규정 §3-26②)
- (경영개선요구)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①필요유지자기자본, ②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③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규정 §3-27①) 등*
 -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상기에 해당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 점포의 폐쇄·통합,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규정 §3-27②)
- (경영개선명령)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규정 §3-28①)
 - 주식의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합병, 영업의 양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규정 §3-28②)
- (경영개선계획)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운용사는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의무 부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내용 및 개선안

구분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필요유지자기자본 충족 & 고객·고유자산운용필요 자본 50%미만	필요유지 자기자본미달
조치내용	조직·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제한 등	점포폐쇄 및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 관리인 선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요구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명령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퇴출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흐름도



제4절 회계처리

I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계리



- 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법 §32①, 시행규칙 §6②)

II 회계기간



-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가능 (법 §32①, 시행규칙 §6① 1호)

*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경우

제5절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I 업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공시



- (의의) 집합투자업자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별 업무 보고서를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작성·제출(법 §33①, ④)
 - * 업무보고서 양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의 17호)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통하여 제출
-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영업보고서)하여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정기공시(법 §33②)
 - * 영업보고서의 양식과 공시방법 등은 금융투자협회에 위임(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4조 ~ 제2-57조)

II 경영상황 보고 및 수시공시



- (의의) 운용사는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법 §33③, 영 §36⑤)
 -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영 §36②, 규정 §3-70,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2-59조 및 시행세칙 별지 2호)
- 또한 보고와 동시에 또는 보고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 발생을 수시공시
 - *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점 및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시

제6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I 제한 내용 및 예외적 허용

- (증권의 소유 제한) 대주주 발행증권의 소유 및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의 자기자본 8% 초과 소유금지(법 §34① 1, 2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영 §37①, 규정 §3-71)
- (불리한 거래 제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법 §34①3호, 영 §37④ 1호)
- (신용공여 제한) 금전 등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34②)
 - 임원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신용공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영 §38②, 규정 §3-72)

II 이사회 승인 및 보고·공시 의무

- (사전 승인) 운용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승인을 취득할 것이 요구(법 §34③)
 - * 재적이사 전원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 필요
- (보고 및 공시의무)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법 §34④)
 - 또한, 분기별로 계열회사 발행 주식 보유 규모, 신용공여 규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법 §34⑤)

제 3 장 영업행위 규제

제3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개 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에서 생산자, 매매자, 중개자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편, 자본시장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금융투자상품이 여러 주체 사이에서 거래되면서
 - 다른 금융시장에 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비전문가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시 전문가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과 6개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을 명시
 -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공통 영업행위 규칙과 개별 영업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함.

제2절 공통 영업행위 규제

I 업무경영 등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 금융투자업자가 6개 금융투자업을 In-house 형태로 경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확대되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 도입

1 신의성실 및 이해상충금지 원칙(법 §37)

-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금지

2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법 §44)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정보교류 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법 §45)

가 사내 정보교류 차단벽

-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임원 및 직원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 공동 이용 등의 행위 금지

나 사외 정보교류 차단벽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제공, 임원 및 직원 겸직 또는 파견,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 공동 이용 등의 행위 금지

II 투자권유(Solicitation) 규제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

- 다만, 투자목적, 전문지식 보유여부,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한 후,
- 스스로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

1 고객알기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법 §46)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동 의무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여되므로, 일반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적합성원칙(법 §46)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투자업자가 적합성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알기의무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3 파생상품 등 판매시 적정성원칙(법 §46의2)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데,
 -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상품인 파생상품 등의 판매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로 적정성원칙을 도입

4 설명의무(Product guidance)(법 §47)

가 의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금융투자업자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
- 설명의무는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설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위반의 효과(법 §48)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투자상품 취득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되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

5 부당권유의 금지(법 §49)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투자권유준칙의 제정·공시 의무(법 §50)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투자권유준칙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함
 - 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음

7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

가 의의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
 - 동 제도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및 수익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상 펀드취득권유자 제도를 전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종전 증권회사의 전담투자상담사 제도를 대체한 것

나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법 §51)

- 금융투자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제외)를 위탁할 수 있고,
 - * 1. 금융위원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이미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시행령 §56)
 - 3.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금융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하여야 함

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법 §52)

-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등은 금지

Ⅲ 기타 영업행위 규제

1 직무관련 정보이용의 금지(법 §54)

-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
 - 우월한 정보력을 이용한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

2 손실보전 등의 금지(법 §55)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 금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중요한 원칙인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

3 투자광고 규제(법 §57)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금지
 -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

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 가능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설명의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익률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한 것으로 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표시하는 것은 금지
 - 또한, “독립”이나 “Independent” 등의 문자를 표시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함

4 수수료 관련 규제(법 §58)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 협회는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

5 계약서류 교부 및 계약의 해제(법 §59)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이는 투자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교부의무를 의무화 한 것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 계약(법 §59②, 시행령 §61② 참조)을 체결한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제 가능
 -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송부한 때에 그 효력 발생

6 자료의 기록 및 유지 의무(법 §60)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 * 영업·재무·업무·내부통제에 관한 자료별로 3년~10년으로 차등화
 - 금융투자업자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7 소유증권의 예탁(법 §61)

-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
 - 외화증권의 경우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할 수 있음

8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법 §62)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거래를 종결시켜야 하고,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간주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법 §63)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함)은 자기의 계산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동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함

10 손해배상책임(법 §64)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거래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제

I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법 §79)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법 §80)

가 자산운용 지시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재산별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함
-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지시만을 하고, 신탁업자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실행하고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

나 직접취득·처분권

-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 거래시 적시에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을 허용
 - * ①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약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②채무증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 시행령 제18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CP 또는 전자단기사채), ③장내파생상품 매매, 단기대출, ④어음(금융기관 발행)의 매매, ⑤CD 매매, ⑦대외지급수단 매매, ⑧헤지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매매,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 ⑨환매조건부 매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고,
 -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에서 통합주문을 하는 경우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하게 거래결과를 배분할 여지를 예방하기 위함

다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거래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 투자신탁과 달리, 투자회사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를 대표하여 투자회사 명의로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

3 자기집합투자증권 취득의 제한(법 §82)

가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음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이 투자금의 반환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기 때문

나 예외적 허용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1조에 따라 반대주의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4 금전차입 등의 제한(법 §83)

가 금전의 차입

(1)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함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차입을 위한 담보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예외적 허용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 차입한도는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금전의 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 대여하는 것은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
 - * 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 제외), 창업투자회사 등(영 §83②)

다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한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
 -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은 가능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법 §84)

가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예외적 허용

-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은 예외적 허용
 -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6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의 제한(법 §84)

가 대상 증권의 범위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되,
 - 투자신탁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제외하고
 -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원화로 표시된 CD, CP 이외의 어음, 예금, 대출채권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채권은 포함

나 지분증권 투자한도

(1) 원칙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은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하여 취득 가능

-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 예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Shadow Voting

다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투자한도

□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곱한 금액

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법 §85)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

< 불건전 영업행위 예시 >

[자본시장법]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예외 : 정보 미이용 입증, 차익거래 등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 예외 : ① 인수일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
 - ② 국채, 지방채, 통안채, 신용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의 금융
 -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 관계인수인 : 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
 - ② 판매비중 30% 이상인 인수인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 특정 집합투자자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 예시 >

[시행령]

-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판매회사(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임직원 포함)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 예시 >

[금융투자업규정]

-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 매매하게 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 겸영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변액보험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미영위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8 성과보수의 제한(법 §86)

가 원칙적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원칙적 금지

나 예외적 허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 사모 집합투자기구
- 일정 요건*의 공모 집합투자기구

*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영 §88①)>

-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기준지표 등(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수 대비 집합투자기구 성과가 낮은 경우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해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시 성과보수를 받지 않을 것
- 환매금지형 펀드일 경우 최소 존속기한이 1년 이상일 것 (환매금지형 펀드가 아닌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할 것)
-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보수 산정방식과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

9 의결권(법 §87)

가 의결권 행사방법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나 의결권 행사방법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중립투표(shadow voting)를 하여야 함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그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포함)
 - ② 주식발행인이 집합투자업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포함)

다 의결권 행사방법 제한의 범위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가능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 행사 가능
 -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계열회사 주식을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투표(shadow voting) 하여야 함

라 의결권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종목, 동일법인 발행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 금지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마 의결권 행사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 의결권공시 대상법인 : 각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인
 - ** 기록·유지 방법 : 영업보고서에 기재
-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주권상장법인인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에 한함)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10 자산운용보고서(법 §88)

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은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유통공시라 할 수 있음

나 교부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성·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

11 수시공시(법 §89)

가 공시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나 공시방법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함

- 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 ②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
 - ③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는 시행령에 정하고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었으나, 2009년 개정시 법률에 정하고 세가지 방법 모두 공시하도록 하였음

12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법 §90)

가 정기보고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수시보고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다 공시

□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협회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13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법 §91)

가 투자자의 열람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나 집합투자계약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II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법 §96)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법 §97)

가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의 사전교부

-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
 - ①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②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③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④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
 - ⑤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⑥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⑦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 ⑧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⑨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서면에 의한 계약의 체결

-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 ①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에 기재된 사항
 - ②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③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④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⑤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함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법 §98)

- 자본시장법은 크게 투자자문·일임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과 일임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구별

가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공통 금지행위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다음의 행위 금지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업자 금지행위

- 투자일임업자는 다음의 행위 금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⑥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⑨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⑩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성과보수의 제한(법 §98의2)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 수취 금지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성과보수 수취 가능

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②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보수 산정방식 등을 해당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5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법 §99)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3절 유사투자자문업

I 의의(법 §101)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함

II 신고 및 보고의무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III 자료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IV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다음의 행위는 금지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④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 4 장
공모집합투자기구

제4장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기구 개요

I 집합투자의 정의



□ 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②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③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④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법 §6⑤)

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 단독펀드 금지*(‘15.1.1.시행)

* ‘15년 이전에는 복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하였으면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도 펀드로 분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15년 이후에는 투자자가 1인인 펀드는 의무해지·해산 (다만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펀드로 투자자 수가 1인인 펀드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②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을 것 : 펀드 운용의 독립성

③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 운용방법제한 폐지*

* 舊 간투법상 자산운용방법은 취득·매각, 대여(투자증권), 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관리·개량·대선(선박)으로 열거

④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할 것

II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1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계약형)과 투자회사(회사형)으로 구분되며(법 §182②)
 - 자본시장법은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자금의 Pooling이 가능한 모든 형태를 허용
 - ✓ 간투법에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 인정하였으며, PEF의 경우만 합자회사형태를 인정
 - ✓ 상법상 형태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므로 펀드의 본질(유한책임)과 맞지 않아 제외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구 분	형 태	집합투자계약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신탁계약	투자신탁계약	수익증권	위탁자
투자회사	주식회사	정관	지분증권(주식)	법인이사
투자유한회사	유한회사	정관	지분증권(출자지분)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	합자회사	정관	지분증권(출자지분)	무한책임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정관	지분증권(출자지분)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	합자조합	조합계약	지분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익명조합	익명조합	익명조합계약	지분	영업자

*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은 설정사례 없음('17.12월 기준)

2 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 환매 가능여부에 따라 개방형·폐쇄형으로, 추가설정납입 가능여부에 따라 추가형·단위형으로 분류
 - 개방형펀드(Open-end fund)는 투자자의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지속적으로 판매·환매가 가능하므로 평가, 기준가격이 중요
 -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법 §230③)
 - ✓ 상장으로 환매부담이 줄어들어 환금성이 없는 자산이나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투자 가능

[운영구조에 따른 펀드조합]

		추가설정여부	
		추가형	단위형
환매가능 여부	개방형	◎	○
	폐쇄형	×	◎

- 추가·폐쇄형은 법상 불가
- 추가·개방형과 단위·폐쇄형이 일반적인 구조
- 단위·개방형 구조는 가능하나 소규모 펀드 문제가 발생할 소지

3 수익자수에 따른 분류

- 투자권유를 받은 자의 수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펀드,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펀드(법 §90⑦, 영 §14)
 - ✓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며, 사모펀드는 특례를 두어 적용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법 §249)

4 설정국가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며, 외국펀드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법 §279)
 - 외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고도 하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되어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국내 판매등록 필요
 - ✓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제2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구조

I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1 집합투자업자(법 §184②)

- 투자신탁의 위탁자 혹은 투자회사 등의 법인이사로서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주체
 - 펀드 설정·해지, 펀드재산의 운용·운용지시, 기준가격의 산정, 수익증권 발행 및 환매업무를 수행하는 최종 책임자
 - 취급하고자 하는 펀드종류에 따라 인가단위별 인가취득 필요

2 신탁업자(법 §184③)

- 고유재산과 펀드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운용사의 계열회사는 신탁업자가 될 수 없음
 -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확인, 신탁재산에 관한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 위반에 대한 감시업무 및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수행

3 판매회사(법 §184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펀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펀드의 판매 및 환매업무 수행
 - ✓ 자산운용사도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는 경우 펀드 직판 가능
 - 투자권유규제(고객과약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및 투자광고규제가 적용되며 펀드 투자실적과는 무관

4 일반사무관리회사(법 §254)

- 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등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펀드재산의 계산, 기준 가격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상 등록 필요

5 평가회사(법 §258, §263)

- 펀드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펀드에 제공하는 자로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채권평가회사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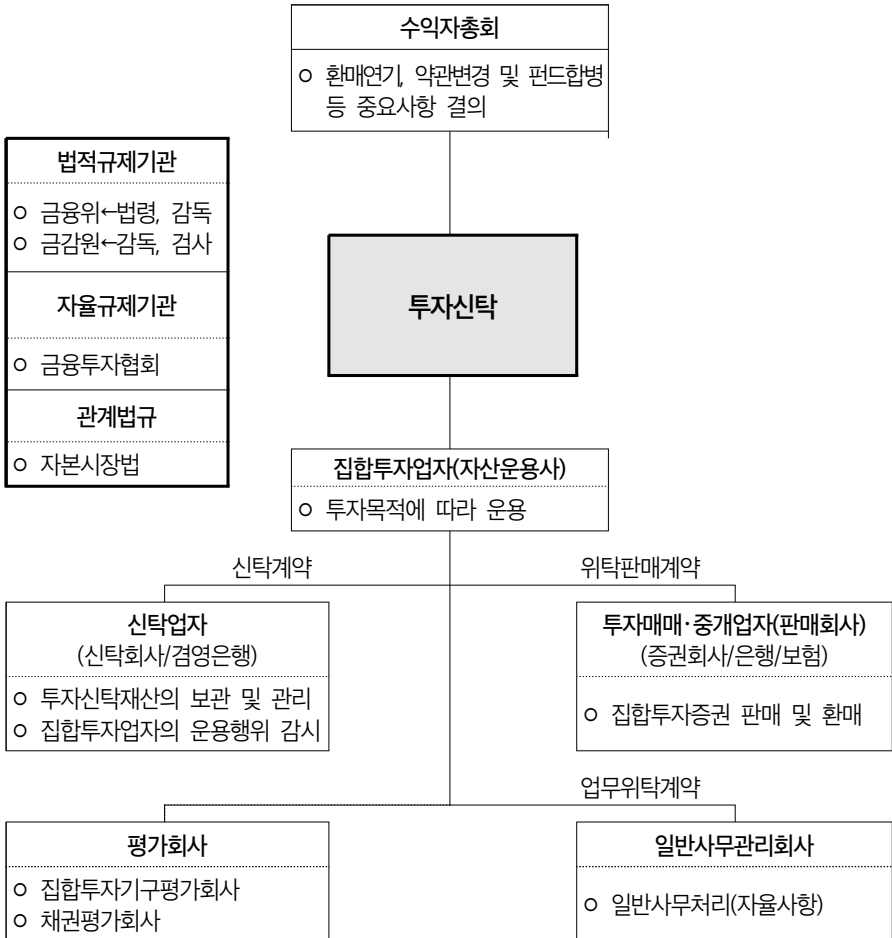
II 집합투자기구 구조



1 투자신탁의 구조(법 §184)

-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구조
 - 투자신탁의 당사자는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수익자
 -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운용지시 및 수익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및 감시업무를 수행
 -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고 환매청구, 수익자총회 관련 권리를 가짐

[투자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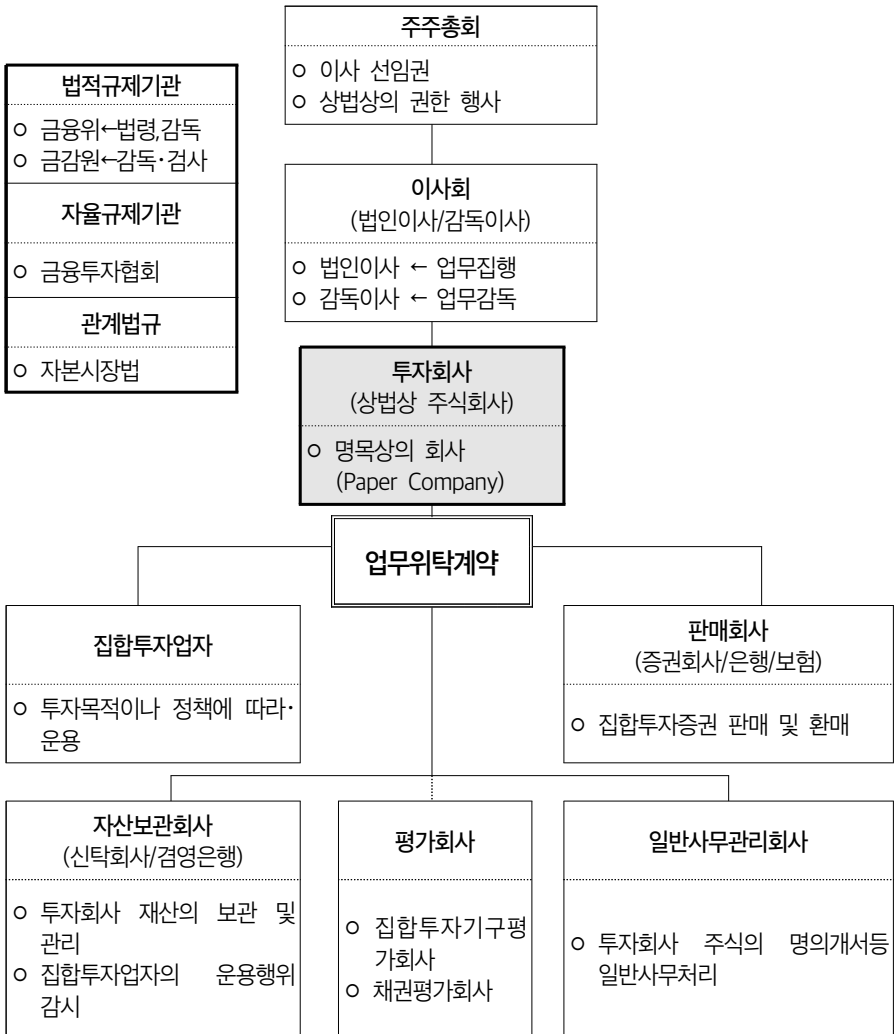
2 투자회사의 구조

- 자산운용사 등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자산운용사가 법인 이사로서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하는 구조(법 §184② 및 §194)
 -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도관체로서 Paper company로 설립되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 위탁(법 §184①)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에, 자산보관은 자산보관회사에, 주식의 판매·환매는 판매회사에, 일반사무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법 §184⑥)

[투자회사의 구조]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특수 형태

I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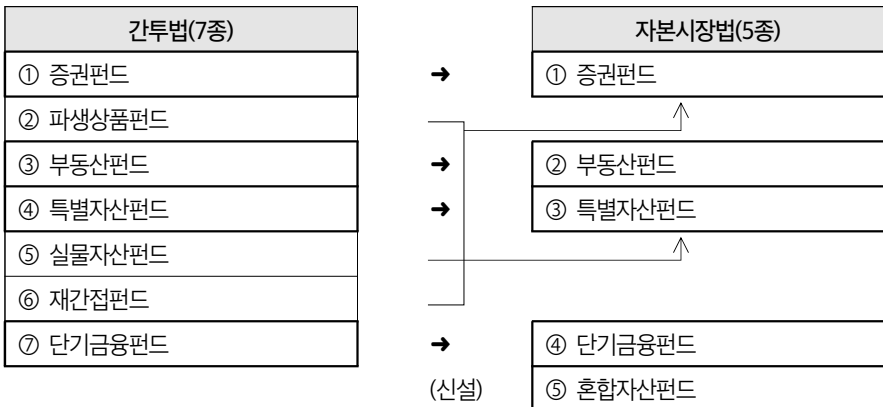
1 개관

가 규정의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종류가 7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고 투자대상자산 제한도 완화
- 간투법은 7종으로 분류하면서 종류별 투자가능 자산을 엄격히 규제 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은 5종으로 단순화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을 제한하지 않으며* 펀드재산의 최저투자한도 등을 통해 분류(법 §229)

*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제한은 없음

[간투법 및 자본시장법의 펀드종류]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간투법상 파생상품펀드와 재간접펀드는 펀드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으며 법상 제한만 남게 됨
 - ✓ 파생상품과 재간접은 투자대상자산이 아니라 투자수단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종류는 최종 투자대상자산에 따라 분류
(파생상품펀드와 재간접펀드는 기초자산의 투자대상자산에 따라 증권펀드 등으로 분류, 법 §229, 영 §240)

[자본시장법상 펀드종류 구분기준 (법 §229)]

종류	투자 대상자산				최소 투자비율				한도
	증권	파생	부동산	특별 자산					
증권 펀드	○	○	○	○	펀드재산의 50% 이상 증권에 투자				≥50%
					증권	증권파생상품			
부동산 펀드	○	○	○	○	펀드재산의 50% 이상 부동산에 투자				≥50%
					부동산 관련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부동산 대출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	○	○	○	펀드재산의 50% 이상 특별자산에 투자				≥50%
					증권 및 부동산 제외 투자대상 자산				
MMF	○	-	-	-	펀드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100%
					단기금융상품				
혼합자산 펀드	○	○	○	○	제한 없음				

나 특수 형태 및 법상 제한

-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종류(5종)는 아니지만 펀드구조 등을 반영한 특수형태 펀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 펀드가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을 운용할 경우 그 운용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상 운용규제

[법령상 운용규제 및 특수한 형태]

구분	종류	분류 기준	분류 근거
법령상 운용규제	재간접형	펀드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할 경우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 (법 §81① 3호 다목)
	파생형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¹⁾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 운용시 - 위험지표를 인터넷에 공시 - 투자설명서에 위험지표 개요 및 공시사실 기재 - 장외파생상품 매매 위험평가액이 10% 초과시 장외파생상품 운용 위험관리방법을 금융위 신고 (법 §93)
		파생결합증권(ELS)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펀드 ²⁾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파생형으로 별도 분류 (원금보전형 ELS 제외) ³⁾
특수 형태	종류형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법 §231
	전환형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펀드	법 §232
	모자형	다른 펀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법 §233
	상장지수형 (ETF)	상장지수를 추적하도록 설정된 개방형 인덱스펀드	법 §234

- 1) 파생규제 개념변경 :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간투법)
→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자본시장법)
- 2) ELS(파생결합증권)가 증권이므로 ELF는 원래 비상 파생규제(법 §93) 대상은 아님 (:위험평가액은 파생상품만 산정)
- 3) 원금보전형 ELS가 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파생형에서 제외

II 증권집합투자기구



1 정의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229 1호, 영 §240①)(시행령상 증권*은 제외하며, 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포함)
 - * 시행령상 제외되는 증권(영 §240②)
 -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SOC펀드의 주식, 채권
 - 부동산 관련 증권(부동산 SPC의 증권)
 -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만 투자하는 법인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 투자계약증권은 제외→제외되는 증권에서 제외되므로 동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펀드)

2 주된 투자대상자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기재(영 §215)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은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영 §217)

3 운용전략에 따른 분류

- 펀드의 운용전략에 따라 다양한 전략의 펀드 설정(법상 분류는 아님)

가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

- 액티브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하는 펀드이며,
 - 패시브펀드는 지수 추종을 통해 시장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와 ETF 등을 말함

- ✓ 일반적인 주식형펀드를 액티브펀드로 볼 수 있으며, '09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익을 추구하는 패시브펀드가 증가하는 추세

나 목표전환형펀드

- 주식 등에 집중 투자하여 목표수익에 도달(예: 10%)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로 전환(유형변경을 수반)하여 계속 운용하는 펀드

다 분할매수펀드

- 수익률 제고를 위해 매수시점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펀드
 - ✓ 전략 예시 : 매월 20% 분할매수,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pm 10\%$ 조정
 - 시장상황과 연계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매수 전략은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분할매수와 분할매도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출시 가능

라 연금펀드

- 가입자격과 세제혜택 등이 있는 개인연금펀드(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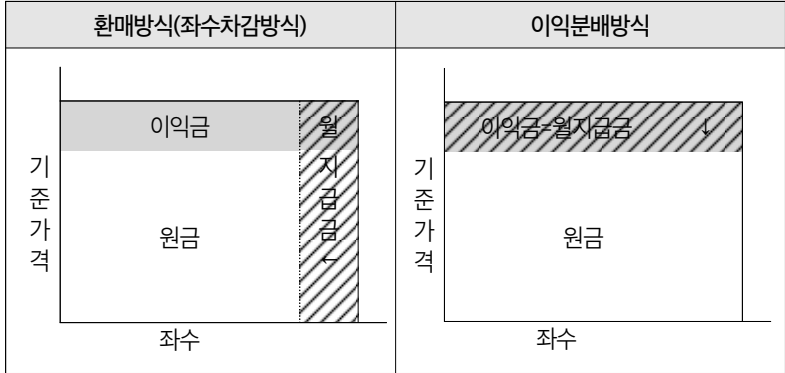
마 월지급식펀드

- 펀드 투자 이후 매월 이익 또는 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펀드
 - 통상 매월의 투자이익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을 위하여 일부 투자원금에서 분배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원금이 감소할 수도 있음
 -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환매방식과 이익분배방식이 있으며, 지급시기 및 비율을 투자자가 직접 정하는 펀드와 운용사가 정하는 펀드가 있음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 환매방식(좌수차감방식)은 매월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하는 형식이고, 이익분배방식은 이익금(이익초과 분배도 가능)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매방식은 원금과 이익금으로 구성되며, 이익분배방식은 이익금으로만 구성되므로 세제상 차이발생



바 ELF

- 주가지수 또는 특정 가격의 변동에 연계하여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화증권인 파생결합증권(ELS)*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등

- ELS는 발행사인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으나, ELF는 펀드이므로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는 모두 판매 가능

사 레버리지·인버스펀드

-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수의 배수 혹은 음의 배수로 추적하는 펀드
 - 레버리지·인버스펀드는 기간수익의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가 아니라, 일간변동율의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를 추적
 - 복리효과로 인해 특정기간에서 예상외의 큰 손실 발생 가능

4 수수료 및 보수(법 §76③)

가 투자비용의 구성

-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서 부담하는 투자비용은 수수료와 보수로 구분
- 수수료는 1회성 비용이나, 보수*는 지속적 용역의 대가로 펀드재산의 일정률을 매년 지급
 - *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 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음

(1) 판매수수료

- (개요) 투자자가 펀드 매입·환매시 일정률을 판매회사에 1회성으로 지급
- ✓ 판매수수료 징수시기에 따라 선취 또는 후취방식이 있음

[중류형펀드의 특징]

구분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비고
A클래스	선취	낮음	장기투자시 유리(2년 이상)
B클래스	후취	중간	최근 S클래스로 다수 설정
C클래스	-	높음	단기투자시 유리(1~2년)

* 온라인전문 클래스 Ae, Be, Ce로 추가적 구분 가능

- (법정한도) 수수료의 범상한도는 납입·환매금액의 2%이내*이고 판매 회사별 차등 적용 가능

* 기존 5% → 2% 이내로 인하 (영 §77④, '09.12.21. 개정)

(2) 판매보수

- (개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속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펀드재산의 일정률을 매년 제공

- (법정한도) 판매보수의 범상 한도는 펀드 연평균가액의 1%이내*

* 기존 5% → 1% 이내로 인하 (영 §77④, '09.12.21. 개정)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채감방식(CDSC)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허용하되 3년차 이후의 보수율은 1.0% 미만이어야 함(영 §77④ 2호)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매년 판매수수료가 체감되는 미국의 조건부 이연판매수수료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판매보수가 체감되도록 운영

(3) 운용보수

- (개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운용행위에 대한 대가로 펀드재산의 일정률을 매년 제공
 - (법정한도) 운용보수는 법정한도 없음

나 환매수수료(법 §236)

- (의의) 펀드 조기 환매는 수익성자산 매각에 따른 잔존수익자의 손실 및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익금 등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펀드에 편입
- (성격)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금 조기회수의 패널티적 성격과 잔존 수익자에 대한 이익담보적 성격을 가짐
- (목적) 환매수수료는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유가증권매매 거래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잔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
 - 펀드투자자의 단기투자를 차단하여 장기투자 문화 정착
- (효과) 환매수수료는 펀드 환매시 순자산가치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기간 동안에는 환매 억제 가능
 - 환매수수료는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이익금 또는 환매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

○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법 §236②)*

* 종류형의 경우 클래스 별로 귀속

□ (관련법규) 환매수수료 부과를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영 §255)

5 최저순자산 미달 펀드 등록취소(법 §243)

□ (현행 법제) 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순자산액이 3월 이상 계속하여 10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법 §243②)

* 등록취소는 간투법상 의무사항, 자본시장법상 임의사항임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절차) 아래의 절차에 따름

- ① 취소 대상 투자회사 확인 후 최저 순자산액 미달로 등록취소 통보
- ② 금융위 및 금감원의 청문* 실시
- ③ 청문 결과에 따라 투자회사에 취소사실 통보
- ④ 등록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선임

* 간투법 펀드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펀드는 우리원이 청문을 실시

6 펀드 반대매수청구권 제도(법 §191)

□ (청구대상) 펀드 합병, 수익자총회를 필요로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 보수·수수료 인상, 환매대금지급일 연장, 환매금지형펀드로의 변경 및 신탁업자·자산운용업자, 펀드종류, 주된 투자대상자산, 계약기간 변경

□ (청구요건) 수익자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의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매수절차) 매수청구기간 만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 (매수연기) 반대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반대매수 연기

III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정의)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229조 2호, 영 §240㉓)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시행령상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부동산관련 증권** 포함)

*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영 §240㉔)

-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및 운영
-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의 취득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포함)이 채권자인 대출채권(부동산담보 有)
(※ 부동산 담보가 없는 경우는 특별자산펀드)

**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영 §240㉕)

-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부동산 관련 증권(부동산 SPC의 증권)

- (운용특례) 일반 펀드는 금전차입과 금전대여가 엄격하게 제한되나, 부동산 펀드의 경우 금전차입과 금전대여가 가능(법 §94)

- (금전차입)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펀드 순자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까지 차입가능(영 §97㉗)

* 수익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 그 의결한 한도까지 차입가능

- 차입한 자금은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에는 운용 금지

- (금전대여) 펀드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다른 펀드)에 대하여 펀드 순자산의 100%까지 대여가능(영 §97㉘)

-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규약에 금전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시공사 지급보증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

IV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정의)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229조3호, 영 §240⑥)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 민투법상 인프라투융자회사(SOC펀드),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펀드 포함

V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정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등 최소 운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법§229조 4호)
- (규제현황) '12. 8월 불완전판매 우려 감소 및 펀드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주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배분펀드를 허용

V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1 정의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229조 5호)
 - ※ 투자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잔존만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규정에 별도로 정해져 있음.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부가평가, 엄격한 운용규제(신용위험, 금리변동위험, 집중투자위험, 통화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 적용

2 규제현황

가 운용금지 자산(영 §241①, 규정 §7-16)

- 외화표시자산(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또는 외국통화를 매개로 하는 거래의 방법으로 MMF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
- 주권, 출자증권,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외국법인 발행 증권,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DR)
- 신탁회사 및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출자증권, 주택저당증권
- MMF외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구조설계상품(Structured Product) 등
- 옵션CP 등 조건부투자증권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제한(보유 채권총액의 5%이내에서만 가능)

나 잔존만기 요건(영 §241)

- 잔존기간 규제대상을 현행 채권·CP에서 모든 운용자산으로 확대하고 채권·CP외의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을 6월로 단축(영 §241①)
- 가중평균잔존만기(영 §241② 3호)
 -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기간을 120일에서 75일로 단축
 - ✓ 가중평균잔존만기 : MMF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등의 운용 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다 신용등급 요건(규정 §7-17)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투자증권(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 AA이상, 전자단기사채 A2이상) 이내일 것)
 - * 20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등급이 상위 2개 신용등급 범위 이내일 것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투자증권
- 신용등급 하락시 조치(MMF 편입자산이 등급하락, 채무불이행, 파산 등으로 인해 부실화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신용등급 하락시 : 당해 투자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집합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 발생시 : 당해 투자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라 분산투자 요건(규정 §7-19)

-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 MMF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투자증권의 취득 당시 아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에 운용할 수 없음
 - 최상위등급의 투자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어음의 경우 3%)
 -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투자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어음의 경우 1%)
- 동일인 투자한도
 - 동일인이 발행한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 : 각 MMF 자산총액의 10%

마 유동성 요건(규정 §7-16)

- 자산총액 대비 1일 유동성 자산 10%, 7일 유동성 자산 30% 이상 유지*
 - * 펀드별·운용사별로 자산구성내역 및 운용전략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규제비용 준수하도록 규제
-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위 비율 하회시 1개월간 유예

바 펀드규모의 대형화를 위한 신규 MMF 설정 제한(영 §241② 4호)

- 고객 유형(개인/법인)별로 설정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고객용 : 3,000억원 초과시만 개인용 신규펀드 설정 가능
 - 법인고객용 : 5,000억원 초과시만 법인용 신규펀드 설정 가능
- ✓ 3,000억원과 5,000억원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등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확인

VII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 환매금지형펀드(법 §230)

가 개념

- 신탁계약기간 중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정)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도 금지(법 §230①)
 - ✓ 일정기간동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펀드(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일부 환매시 펀드운용이 어려운 펀드)에 대하여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

- 예외적으로 추가발행 가능한 경우(영 §242①)
 -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
 - 기존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함(법 §230 ③)
 - ✓ 환매금지형(폐쇄형)은 일정기간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펀드이므로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을 의무화

나 적용의무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해야 함(영 §242②)
 - 다만,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라 하더라도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설립하지 않을 수 있음

2 종류형펀드(법 §231)

가 개념

- 종류형펀드는 투자자가 펀드가입 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비용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 하나의 펀드 안에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펀드

나 특징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지만, 모든 클래스가 하나의 펀드로 통합 운용됨

- 판매수수료 여부 등에 따라 A, B, C클래스 등으로 구분하고 온라인 전용 클래스는 Ae, Be, Ce클래스 등으로 구분
- 종류형펀드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를 통해 동일 펀드 내에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판매방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
- 또한 종류(class)는 달라도 운용은 동일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규모의 이익 뿐 아니라, 관리비용·운용보수 절감 등의 장점

다 규제특례

- (종류 수익자총회) 종류형은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집합투자자만으로 총회개최 가능(법 §231②)
- (종류형 전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경우 종류간 전환이 가능하고, 종류형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으로 변경등록 가능(영 §243②)

3 전환형펀드(법 §232)

가 개념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의하여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집합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나 규제특례

-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비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등록 가능(영 §244②)
- ✓ 외국의 펀드(UCITs지침에 의한 SICAV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

4 모자형펀드(법 §233)

가 개념

-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로서,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는 동일해야 함(법 §233①)
- 모자펀드(Master-Feeder Fund) 구조 하에서는 펀드그룹은 서로 다른 유형의 투자자에게 판매되지만,
- 모두 동일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복수의 독립적인 개방형펀드(Feeder Fund)를 하나의 펀드(Master Fund)로 통합할 수 있게 되어 펀드관리 비용의 감소와 운용의 효율성 증대
- ✓ 모자형펀드와 재간접펀드는 다른 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재간접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반면, 모자형펀드는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펀드(Master Fund)에만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규제특례

-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할 수 없고,
-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함(법 §233①)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할 수 없음 (규정 §7-25)

- 비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등록 가능(영 §245㉓)
 - ✓ 기존 펀드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하는 모펀드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변경되는 자펀드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모자구조로 전환
 - 둘 이상의 펀드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펀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모자구조로 전환은 금지(수익자총회 없이 합병의 효과가 있어 금지)되나, 소규모펀드는 이러한 전환을 예외적으로 허용(영 §245㉔)

5 상장지수펀드(ETF)(법 §234)

가 개념

- (개념) 특정 지수 및 자산의 가격 변화에 순자산가치가 연동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
 - ✓ ETF(Exchange-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설정후 30일 이내에 상장
 - (발행시장) 지수 및 가격 변화에 연동하도록 구성된 자산을 현물로 납부하여 설정·환매
 - (유통시장)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거래

나 장점

- 투명성(Transparency)과 거래편의성(Flexibility)
 - ETF가격 및 펀드의 자산구성내용이 매일 공시되며, 주식과 같이 매매와 용이하고 결제주기가 일반펀드에 비해 짧음

- 유동성(Liquidity)과 환금성
 - 유통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가 양방향 호가를 공급하여 유동성과 환금성을 보장
- 분산투자(Diversification)
 - ETF는 1종목만 매매하더라도 당해 지수구성종목 전체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산투자수단
- 낮은 보수(Cost effectiveness)
 - 주식형 ETF 보수는 주식형펀드에 비해 저렴

다 특징

- 현물 설정·환매
 - ETF 설정·환매는 현물납입 원칙, 예외적 현금납입 가능
- 설정단위*의 제한
 - 현물바스켓을 구성하는 설정단위의 정배수로만 ETF 설정·환매 가능
 - * CU(설정단위, Creation Unit)는 ETF 설정·해지의 최소 단위이며, 1CU의 구성내역을 PDF(Portfolio Deposit File, ETF 구성종목)라고 함
-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의 균형
 - ETF 순자산가치(발행시장)와 ETF 매매가격(유통시장) 차이 발생시 차익거래로 가격균형 유지
- 지정판매회사 제도
 - 펀드의 설정·환매, 바스켓 구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차익거래 수행, Market Maker* 역할 수행
 - * 지정판매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 중 자산운용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가 Market Maker 역할 수행

라 신종 ETF 도입

- 자본시장법에서는 간투법과 달리 주가지수 외에도 특정자산의 가격 및 주가지수 외의 지수에 연동하도록 하여 신종ETF 설정이 가능(법 §234① 1호)
 - 채권은 물론 금, 원유 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및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의 개발도 가능
 - 한편, '17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기존 패시브 ETF 중심의 규제 정비
- 파생형 ETF
 - (레버리지 ETF) 현물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ETF의 순자산가치 일간 변동률이 기초지수(KOSPI200 등) 일간변동률의 특정배수로 연동하는 ETF
 - (인버스 ETF) 선물매도 등을 통하여 ETF의 순자산가치 변화가 기초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ETF로 하락장에서 수익추구
 - (합성 ETF) 특정 기초자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그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ETF
- 액티브 ETF
 - (정의)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ETF
 - (지수설정) “기초지수”를 설정하고 단순 복제하는 인덱스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 대상인 “비교지수”를 설정하고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
 - (운용규제) ETF의 제도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액티브 펀드 특성을 고려하여 지수복제 관련 규제 및 상장폐지 기준 완화
 - 액티브 ETF에 대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자산을 구성할 의무 면제
 -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일반 ETF에 비해 완화

제4절 펀드 증권신고서 및 등록 제도

I 펀드 증권신고서 제도



1 펀드 증권신고서(법 §119)

가 제도 도입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 확충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펀드에도 증권신고서 제도 도입
- 간투법은 약관보고 제도*였으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펀드는 등록제도, 공모펀드는 신고서제도를 도입 (사모펀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의무 없음)
- * 과거 약관보고 제도는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자 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

[펀드 발행공시 관련 주요 제도변경내용]

구 분	간투법	자본시장법
펀드등록	투자신탁: 보고제(공모사전·사모사후) 투자회사: 등록제(사전)	등록제로 일원화 (§182)
공모펀드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119)
투자설명서	사전 제공 의무화	현행과 같음 (§123, §124)
투자권유	설명 의무	설명 의무외 고객숙지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금지 등 추가

나 제도 내용

- 공모펀드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도입되어 신고서 수리 후 청약권유가 가능하며, 효력발생 전 청약승낙 불가(법 §121)
- (일괄신고 제도) 일반 증권은 일괄신고서 제출 후 발행 시마다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펀드는 일괄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신고 추가서류 제출 없이 계속 판매가 가능(법 §119②)
 - 계속 모집(판매)하는 추가·개방형은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만 모집 가능한 단위·개방형은 증권신고서 제출
- (정정) 형식미비,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요구가 가능하며 그 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법 §122)
 - 단위·개방형의 경우 정정신고는 청약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며 추가·개방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 즉 추가 판매하는 경우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봄

※ 의무 정정신고 사유 (법 §122)

- ▶ 모집가액, 발행예정기간/금액 변경, 인수인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 ▶ 투자위험요소, 파생펀드의 구조와 공시
- ▶ 결산 재무제표 확정, 펀드간 합병계약 체결, 중대 소송의 제기
- ▶ 표시내용 불분명으로 오해, 불리한 정보 생략 또는 유리한 정보 강조 등 과장 표현

다 효력발생기간

-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며 동 기간 내에 수리
 - 효력발생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

일에 수리한 것으로 보아 효력발생기간* 계산(증발공 규정 §2-3⑤)

*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은 효력 발생기간에 영향 없음

[효력발생기간]

구 분	효력발생일
- 신규모집	15일
- 상장된 폐쇄형 증자(기존 투자자 배정)	10일 (7일)
- 모집·매출가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정정신고	3일
-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정정신고	수리당일
-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	3일
- 합병신고	3일

[신고서 절차 및 신규 등록 절차]

펀드형태		최초 설정		비 고
		제출서류	심사기간 (공휴일 포함)	
공 모	추가·개방형	일괄신고서 (+등록신청서 표지)	효력발생 15일	신고절차로 등록 완료
	나머지 (단위· 폐쇄형)	일반신고서 (+등록신청서 표지)	효력발생 15일*	신고절차로 등록 완료
사모		등록신청서	심사 20일 이내	변경등록 절차

* 폐쇄형 증자의 효력발생기간은 10일(제3자 배정방식) 또는 7일(주주배정방식)

2 투자설명서(법 §123)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기재사항 누락이 금지(법 §123②)
 -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통상 증권 신고서 표지만을 투자설명서로 교체하여 사용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투자설명서 교부) 투자자에게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법령상 설명의무* 사항 등을 설명하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법 §123㉠)
 - * 상품내용, 투자위험, 투자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지 등
 - 설명(청약의 권유)은 투자설명서와 예비·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교부는 간이투자설명서가 원칙(법 §124)
- (투자설명서 제출·작성·공시) 투자설명서는 효력이 발생한 날에 제출
 - 개방형 펀드는 1년에 1회 이상 고친 투자설명서를 추가로 제출(법 §123㉢)
 - ✓ 개방형 펀드는 일반 주식, 채권 등과 달리 유통시장이 없이 발행시장에서만 계속 설정·환매되므로 투자설명서를 업데이트하여 사용
 - 투자설명서는 발행인 본점, 금융위, 거래소 및 영업점에 비치
- (간이투자설명서)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내용 중 일부 생략 또는 중요사항 발취하여 사용 가능(법 §124㉡)

[투자설명서의 사용]

구 분	효력발생전	효력발생후	근 거
청약의 권유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정식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청약권유시 사용의무 [법 §124㉡]
실제 취득시	[실제취득 불가]	정식투자설명서	취득시 교부의무 [법 §124㉠]

II 펀드의 등록



- (펀드등록) 펀드가 설정·설립된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등록의무 부과 (법 §182)
 - 펀드등록 전에는 판매 및 판매광고 금지(법 §76㉢)

- (등록과 신고의 관계) 모든 펀드는 등록을 하며, 공모펀드는 펀드신고서 및 펀드등록절차를 병행(신고·등록 모두 설정 전 진행)
 - 공모펀드는 신고서 제출시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서 효력 발생시 등록된 것으로 의제되며(영 §211⑤), 변경등록도 정정신고 효력 발생시 변경등록 의제(영 §211⑥)
 - 사모펀드는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절차만 진행
 - 펀드 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15일이므로 공모펀드가 수리되면 제출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등록 및 신고서효력 발생
- (등록절차) 등록요건 미비, 등록신청서 허위작성, 흠결 등록신청서의 보완 요구 미이행 등이 아닌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법 §182⑥)
 -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은 처리시한에 미포함
- (등록요건) (법 §182②)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사무관리회사가 영업정지기간중이 아닐 것
 -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위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닐 것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투자익명조합 포함)의 자본금 등이 1억원 이상

제5절 기타 제도

I 자산운용의 제한



1 (투자대상자산) 증권* 또는 파생상품(법 §81① 1호)

* 제외 :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 원화표시CD, 기업어음증권(은행, 산은, 중기 발행)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등

투자대상자산	한도	예외
동일종목증권 (동일법인 발행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하 (설정후 1개월 이내 적용배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 한은 통화안정증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원리금 보증채 • 부동산개발회사 발행증권(부동산펀드에 한함) • ABS(기초자산의 합계가 유동화자산의 70%이상) (부동산펀드에 한함) • MBS법상 금융기관 지급 보증 MBS채권 등(부동산펀드에 한함) • 부동산SPC 발행 지분증권(부동산펀드에 한함) • SOC SPC 발행 주식,채권, 대출채권 등(투자펀드에 한함)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이상일 경우 시가총액 한도까지 취득 가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 • 특수채, 기업어음증권, 금융기관(은행, 투자중개/매매업자, 증금, 종금, 저축은행)이 할인, 매매, 중개, 인수한 어음 • 파생결합증권(2011.2.3까지 유예, 100%까지 가능) • 금융기관(저축은행 제외)발행 어음, CD, 채권 • 금융기관(저축은행 제외)이 지급보증한 공모채권, 어음 • OECD 국가 발행 채권,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채권 • ABS법에 따른 후순위사채, 후순위 수익증권(후순

투자대상자산	한 도	예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전용펀드만 • MBS법상 금융기관 지급 보증 MBS채권 • 집합투자기구가 ETF인 경우 동일종목의 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자산총액의 30%까지 <hr/>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각각 다른 종목에 5% 이하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은 동일 종목의 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자산총액의 25%까지 <hr/> (시가총액비중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지분증권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	전체 펀드자산 총액20% 초과 취득 금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회사, 부동산SPC 발행 지분증권(부동산 펀드에 한함) • SOC SPC 발행 주식 등(특자펀드에 한함)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규정 적용 안됨
	개별 펀드 자산 총액10% 초과 취득 금지	
장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요건(금융기관 and 투자적격 등급 이상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매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개별 펀드 자산총액의 10% 초과 금지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파생상품 (장내+장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평가액이 개별 펀드 NAV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금지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발행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개별 펀드 자산총액의 10% 초과 금지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2 (투자대상자산) 부동산(법 §81① 2호)

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후 일정기간(국내 3년, 국외 :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처분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해산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전 이를 처분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해산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투자대상자산) 집합투자증권(법 §81① 3호)

투자대상자산	한도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펀드 자산총액 50% 이하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p>(100%, 재간접 펀드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90%이상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융위가 정한 요건(30종목 등)에 해당되는 E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펀드 자산총액 20% 이하 (일반 ETF의 경우 30%까지 가능) * 설정일로부터 1개월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 이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되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90% 이상 외화자산에 운용되는 경우 한함)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100%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재간접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20% 초과 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100%까지 가능

투자대상자산	한도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간접펀드 판매회사가 받는 보수 및 수수료와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다른 펀드의 판매회사가 받는 보수 및 수수료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수수료 : 2% 판매보수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초과 가능

4 기타의 경우(법 §81① 4호)

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조건부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 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20% 이내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 일부소각,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경우 3개월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법 §81③)

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법 §82)

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권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1개월이내 소각 또는 매도하여야 함)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행사의 경우

6 금전차입 등의 제한(법 §83)

제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금전 차입 금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반대수익자,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만 허용 차입금 전액 변제 완료 전 투자대상자산 추가 매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 대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지주사, 산림조합중앙회, 전업자문사, 일임사 제외)에 대한 30일 이내 단기대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한 채무보증, 담보 제공 금지 	

7 파생상품 운용 특례(법 §93)

대 상	특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등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외파생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8 부동산 운용 특례(법 §94)

대 상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 차입 가능 • 방법 : 금융기관에게 부동산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한, • 용도 :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만 사용 •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다른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대여 가능 • 방법 :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 한도 : NAV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II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판매, 환매 등

1 집합투자기구의 평가(법 §238)

가 기준가격

- (개념)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한 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의 순자산가치를 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로 나눈 금액(영 §262)
 - ✓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권 1좌당 순자산가치를, 투자회사의 경우 1주식당 순자산가치를 의미
- (기준가격의 산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영 §262)
 - ✓ 기준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준비금) /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
- (공고 및 게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법 §238⑦)
 -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영 §262②)
 - 자산운용사는 펀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하도록 규정(영 §262①)
 - 종전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과의 차이가 5~30bp이내인 경우 제외
(증권펀드 : 20bp, 해외증권펀드 : 30bp, MMF : 5bp, 기타 : 10bp)

나 자산의 평가

- (평가원칙)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법 §238)
 - * 예외 : MMF 취득자산의 장부가평가(규정 §7-36)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 (상장주식,채권)	·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부동산	·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후 1년 경과시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금융위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다만, ETF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 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CP, CD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외화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기준가 산출 시점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 표시자산
 -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장외파생상품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사
-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최종시가(매매기준율)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 (구성 및 운영) 집합투자업자는 평가담당 임원,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영 §261①)
- (의무)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영 §261②)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역을 지체 없이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통보
-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제정(영 §238③)

2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법§76)

가 기준가격

- 판매시 기준가격은 투자자가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T+1일 공고)으로 함(법 §76①)
 - 해외펀드 등 T+1일을 적용할 경우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T+2일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음(영 §77②)

- 또한, 매수청구일 기준시점을 지나 시간외매매(Late Trading)를 하는 경우 기존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T+2일 기준가격 적용

나 등록전 판매·광고

-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가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펀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금지(법 §76③)

다 판매가격·환매가격

- (판매가격)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법 §76①)
 - (환매가격)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법 §236①)
- 집합투자자의 이익이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 MMF의 경우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약정하는 등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과거가격)으로 환매 가능(영 §255①)

라 기타사항

- (매수청구일 및 구분기준시간)
 -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유가증권시장 종료시점(15시) 이전으로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정한 시점(규정 §4-48②)
 - 기타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정한 시점
 - 판매회사는 기준시간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기준시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함(규정 §4-48③)

3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법 §235)

가 환매제도 개요

-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환매제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됨(개방형펀드)
 - ✓ 폐쇄형펀드는 거래소에 상장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 가능

나 환매 청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법 §235①)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정상업무 영위가 곤란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 가능(법 §235②)
 - 집합투자업자도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신탁업자(투자신탁) 또는 자산보관회사(투자회사)에 청구 가능(법 §235②)
 - 환매청구를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함(법 §235③)

다 환매방법

-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법 §235⑤)
 -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주선을 할 수 없음

- (현금환매 원칙) 현금환매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법 §235⑤)
- (환매기간)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법 §235④)
 -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실물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5일 이후로 할 수 있음
- (환매가격)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환매하며, 예외적으로 MMF는 환매청구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으로 환매가능(법 §236①)

라 환매연기

- (환매연기사유)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사유(법 §237)
 - 집합투자자의 이익 또는 집합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
 -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절차)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 의결
 -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연기 가능(법 §237①)
 -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증권예탁원에 위탁 가능)으로 집합투자자에게 통지

- (판매금지) 환매연기 기간 중에는 환매연기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 행위도 금지
- (환매재개)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때에는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금을 지급(영§258)
- (일부환매 및 펀드분리) 펀드재산 일부가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펀드지분에 따라 환매가능(영 §259)
 - 수익자총회 등에서 일부환매 결의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부실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 가능
 - ✓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는 변경, 정정을 하며 부실자산으로 구성된 펀드는 신규 등록을 해야 함

제 5 장
사모집합투자기구

제 5 장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개요

I 사모펀드 정의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법 59⑩)

*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산정 제외

II 사모펀드 유형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

※ 종전의 일반사모펀드와 전문사모펀드를 `15.10월 제도개편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경과규정을 두어 `18.10.25.까지 일반사모펀드의 신규설정을 허용)

유형별 펀드 신규 등록·보고건수 추이

(단위 :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9월
일반사모펀드	4,891	6,543	5,445	3,018	1,859
전문투자형사모펀드	13	11	588	2,627	2,940
PEF	45	69	69	109	99
총 계	4,949	6,623	6,102	5,754	4,898

제2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I 설정·설립 및 보고



- (설정·설립 보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설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은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법 §249의6②),
 - 금융위(금감원)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법 §249의6③)
- (변경 보고) 설정·설립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를 해야 함(법 §249의6④)
 - ※ 설정·설립 보고 및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해지·해산 명령 및 형사처벌 등이 가능

II 운용주체 및 투자자에 관한 사항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음(법 §249)
 - * `15.10월 제도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운용업 진입규제 완화(인가제→등록제)
-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나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법인·그 밖의 단체만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법 §249의2)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1억원 또는 3억원

III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는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적격투자자만이 투자 가능하므로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의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음(법 §249의8)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의 적용 배제 예시

- **자산운용의 제한(법 §81)** :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한도 등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법 §88)**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수시공시(법 §89)** : 운용인력 변경, 환매연기·환매재개 결정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229)** :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혼합자산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230)** :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환매금지형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환매청구 및 방법 등(법 §235)** :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해야 하며,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환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운용행위감시 등(법 §247 중 일부)**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등의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기타** :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IV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주요 운용규제 등

- (레버리지 비율) 파생상품 투자,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전 차입 등과 관련된 다음 금액들의 합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 400% 이내여야 함(법 §249의7①)
 - 파생상품 투자 시 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시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 가액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산으로 금전 차입 시 그 차입금 총액
- (손익 분배 또는 순위)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음(법 §249의8⑦)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됨(법 §249의8②)
- (불건전영업행위)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법 §85)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기보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함(법 §249의7③)
- (특정사유 발생보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은 레버리지 비율 한도 초과, 부실자산 발생, 환매연기·환매재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 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함(법 §249의7④)

제3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

I 개념 및 주요 특징



- (개념)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투자자를 사모로만 모집하는 특수한 집합투자기구

*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Partnership)

- (주요 특징) PEF는 무한책임사원(운용자)와 유한책임사원(투자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 형태(명목회사)의 펀드
- 무한책임사원(GP) : PEF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PEF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유한책임사원(LP) : PEF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

PEF 현황

■ '17.9월말 현재 등록된 PEF는 총 424개(출자약정액 63.2조원)

PEF 수 및 자금모집현황

(단위 : 개,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PEF 수	76	110	148	181	226	237	277	316	383	424
약정액(누적)	14.6	20.0	26.6	31.8	40.0	44.0	51.2	58.5	62.2	63.2

II 근거 법규상 분류

□ 국내 PEF는 투자대상 및 근거 법률 등에 따라 7개 PEF로 분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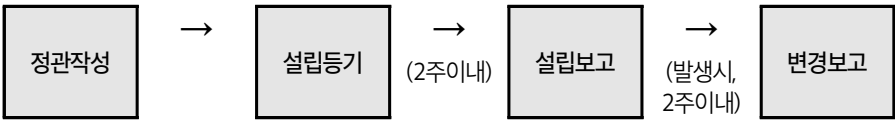
PEF 구분	근거법률	도입	투자유형	등록(보고)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자본시장법	2004년	경영권 참여투자	금융위
기업재무안정 PEF		2010년 2016년	재무구조 개선기업	
창업벤처전문 PEF		2017년	창업벤처	
기업구조개선 PEF	산업발전법	2009년	구조조정 대상기업	금융위 (산자부協)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2006년	해외자원 개발사업	금융위 (농림부協)
해외농업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산림 자원개발협력법	2011년	해외농업 자원개발	금융위 (국토부協)
해외건설촉진 PEF	해외건설촉진법	2016년	해외공사	금융위 (국토부協)

III PEF 설립 및 보고

□ (PEF 설립보고) PEF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법 §249의10㉔)

- 금융위(금감원)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법 §249의10㉕)
-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경미한 사항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 가능) 그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하여야 함(법 §249의10㉖)

PEF 보고절차 일반



IV PEF 사원에 관한 사항



-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 상법상 회사(특별법상 회사 포함)만이 PEF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
 - 업무집행사원(Executive Partner) : 운전자
 - PEF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함(법 §249의14①)
 -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법 §249의14①)
 -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법 §249의14②)
 -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 투자자
 -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법 §249의11④)
 -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로 보유지분을 사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양도 가능(법 §249의17②, ③)
 - 출자의 제한 및 특례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되,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함(법 §249의11①)
 -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 제한이 없으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소투자금액* 존재(법 §249의11⑥)
- * GP의 임원·운용인력 : 1억원 이상, 개인·법인 : 3억원 이상

-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출자총액은 PEF 지분의 30% 미만이어야 함(영 §271의14㉔)
- * 단, 투자대상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30%를 초과하여 출자 가능(영 §271의14㉕)

V

PEF 재산 운용 방법



-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 여유자금 운용, 공동투자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
- (경영권참여 목적) PEF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함(법 §249의12①, 영 §271의15)
 -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
 - 투자기업의 이사 임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
 -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기업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등
- (여유자금 운용) PEF는 상기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법 §249의12②, 영 §271의16)
 -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예치
 - 증권 투자(순자산총액의 30%이내)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등
- (공동투자) PEF는 다른 PEF와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영 §271의15①)
 - 지분증권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지분증권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 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VI PEF의 투자목적회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인정
 - 투자목적회사라는 투자수단을 통해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차입에 따른 투자위험을 투자목적회사로 제한 가능
 - 특히, 복층형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기업 인수시 인수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투자목적회사·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음

PEF의 투자목적회사 관련 요건

(법 §249의13①, 영 §271의19②)

- (회사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운용제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만 가능
- (주주 또는 사원) PEF, 투자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출자전환한 신용공여 금융기관, 전략적 투자자(SI) 등
- (사원수) 그 주주 또는 사원인 PEF의 사원의 수와 PEF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 (서류상 회사)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I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



-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함(법 §249의15)

PEF의 GP의 등록요건

(법 §249의15, 지배구조법 §5)

- (자기자본) 등록신청일 기준 1억원 이상
- (임원) 지배구조법 §5에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운용인력) 2인 이상
-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기관인 경우만 해당)
- (사회적 신용요건)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다만, 법 제448조, 그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제4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이하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제도

I 도입 배경 및 주요 특징



- (도입 배경) 외국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내 투자자들이 제한 없이 외국펀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
 - 외국펀드란 외국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된 외국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등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유사한 것
 - 외국의 공모펀드 뿐 아니라 조세회피지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 PEF,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주요 특징)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외국펀드에 한해 등록절차 완료 후 국내 판매를 허용
 - (투자자)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용 외국펀드와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로 구분
 - (투자권유 대상자 수) 투자권유 수에 따라 공모펀드(50인 이상 투자권유), 사모펀드(49인 이하 투자권유)로 구분
 -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는 사모로만 발행 가능하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로 발행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 (법적형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 (설립지역) 일반투자자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또는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설립된 펀드만 등록 가능
 - 전문투자자용은 설립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II 외국펀드 등록 개요



- 사전 등록 의무(법 §279①)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외국펀드는 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내에서 판매 가능
- 국내펀드 등록 요건 준용(법 §279③, 법 §182②, 영 §209)
 -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국내펀드 등록요건을 적용하며, 전문 투자자용은 사모로만 발행 가능하고, 일반투자자용은 공모·사모로 발행 가능

국내 펀드 등록요건

- 관련업자(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가 업무정지종이 아닐 것
- 역외 펀드가 설립지 국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역외 펀드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지 않을 것
- 투자회사 감독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감독이사가 없는 경우 제외)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투자신탁형태 외국 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전문 투자자용 적용 배제)

- 대상 투자자별 차등 적격요건 적용(법 §279②)
 - 투자자(일반·전문)별로 외국집합투자업자 및 외국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별도의 적격 요건 적용
 - ※ 전문투자자는 투자판단 및 위험 감내 능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요건을 최소화
- 발행방법(공모 및 사모)에 따라 다른 절차 적용(법 §119, §182)
 - 투자권유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발행방법을 공모·사모로 분류하고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공시의무 부과
 - ※ 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등록신고서 제출로 같음

등록절차 비교

구 분	등록 절차
사모발행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심사절차 → 등록 결과 통지
공모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 등록심사절차 → 등록 결과 통지 → 투자설명서 공시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39호 작성지침

** 기업공시서식 집합투자증권 공시기준 작성지침

III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적격 요건

1 외국펀드 등록 요건(법 §279③)

- 업무정지기간 미해당 요건(법 §182② 1호)
 - 관련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적법 설립요건(법 §182② 2호)
 - 본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 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 내용 요건(법 §182② 3호)
 - 집합투자규약에 법령위반 및 투자자 위해가능성이 없을 것
- 투자회사 감독이사 요건(법 §182② 4호, 영 §209, 지배구조법 §5)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등

2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법 §279② 및 영 §301③ 1호)

□ 외국집합투자업자 불처벌 요건

-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 요건(법 §279② 및 영 §301③ 2호)

□ 외국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 요건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IV 일반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적격 요건

1 외국펀드 등록 요건(법 §279③)

□ 업무정지기간 미해당 요건(법 §182② 1호)

- 관련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적법 설립요건(법 §182② 2호)

- 본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 되었을 것

- 집합투자계약 내용 요건(법 §182② 3호)
 - 집합투자계약에 법령위반 및 투자자에 위해가능성이 없을 것
- 투자회사 감독이사 요건(법 §182② 4호, 영 §209 1호, 지배구조법 §5)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닐 것 등
- 자본금 요건(법 §182② 4호, 영 §209 2호)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 조합의 형태로 설립·설정된 경우
 - 등록신청 당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법 §279② 및 영 §301① 1호)

- 운용자산 규모 요건(가목)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일 것
 -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 시 위탁 받은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함
- 최저 자기자본 요건(나목)
 -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 집합투자업자 불처벌 요건(다목)

-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 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연락책임자 선임 요건(라목)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 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3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 요건(법 §279② 및 영 §301① 2호)

□ 외국집합투자기구 설립지 요건(가목)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 제외), 홍콩·싱가포르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 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 보수·수수료 요건(나목)

-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할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 환매 요건(다목)

-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

□ 기타 적격 요건(라목)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을 충족할 것